# 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주요 개정내용

## 1. 개정 배경

○ 도시가스요금경감 신청 및 갱신절차가 불편하다는 민원사례 다수 발생 및 공급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이라는 불만 제기

○ 도시가스요금경감 제도의 경감수혜자 관리를 위한 자격확인 시스템 부재로 관리방법 낙후

## 2. 주요 개정내용

| 구 분 | 현 행 | 변 경 |
|---|---|---|
| 적용기준 | - 신청일 익월부터 적용 | - 신청일 기준 익일부터 적용 |
| 신청방법 개선 | - 일반 도시가스사업자에 방문, 우편, FAX로 신청<br>- 자격증명서류 제출 | - 도시가스사 및 주민센터 접수 신청<br>- 자격증명서류 제출 생략<br>(단, 정부확인이 불가한 예외자의 경우 증명서류로 확인) |
| 자격확인 방법변경 | - 증명서류 제출받아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확인 | - 가스도매사업자는 "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(GRMS)"을 운영, 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한 자격확인 대행 |
| 자격갱신 방법변경 | - 가스도매사업자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각 년1회 자격확인 시행<br>- 2년마다 자격 갱신 | - 갱신을 위한 서류제출 생략<br>(단, 정부확인이 불가한 예외자의 경우 증명서류로 확인)<br>- 일반도시가스 사업자의 자격확인 의무를 도매사업자의 "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(GRMS)" 이용 매월 자격변동 검증으로 대체(자격변동 확인 매월말일 시행) |

## 3. 시행시기 : 2015. 8. 31